

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42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5월 9일

발의자: 이창열 의원

찬성자: 박춘희, 김성기, 이은미 의원

1. 제안이유

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여,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부모교육의 대상, 내용 등(안 제5조~제6조)
- 다. 재정지원, 홍보 등(안 제8조~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」,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붙임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5. 4. 25. ~ 2025. 5. 7.(13일간), 의견없음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부모교육”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,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,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평창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
2.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3.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

5.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부모교육의 대상)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.

제6조(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)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, 시청각 교육,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

2.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

3.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

4.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,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

5.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

6.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

7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(부모교육의 위탁) 군수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지원)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홍보) 군수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.

제10조(협력 체계의 구축) 군수는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<지방자치법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.

1. (생 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· 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 · 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 · 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~ 7. (생 략)

<건강가정기본법>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(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·상담하고,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, 다양한 가족생활교육·부모교육·가족상담·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2조(건강가정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결혼준비교육
2. 부모교육
3. 가족윤리교육
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

<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>

제2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평가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 정 은
연락처	(033) 330 - 2124